

제109회 계룡시의회 정례회
예산결산특별위원회

- 2016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-
전문위원 검토의견 답변서



사회복지실

사회복지실

< 검토 의견 >

□ (147쪽)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비 등 세입예산 삭감 사유

-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비 등 63개 사업에 126억 1,032만원을 세입 예산으로 계상하였는데
 - 전년도 대비하여 5억 4,976만원이 삭감된 사유는 무엇이며, 사회복지지원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은 없는것인지 설명이 필요함

< 답변 >

- 전년대비 금년도 세입예산의 국비 5억 4,976만원이 삭감된 사유는 대부분 국도비 보조금 교부결정된 금액에 따라 편성된 예산임.
- 삭감내역이 큰 금액 위주로 설명드리면,
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사업의 교육급여사업이 소관부처가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변경됨에 따라 국도비보조금을 미편성하여 전년대비 1천 1백 6십만원이 삭감되었으며
- 노인의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“계룡효재가노인복지센터 신축 및 효성요양원 증축공사” 완료에 따른 추가신청 사업이 없기에 내년도 본예산에 전년대비 국비 6억 2,791만원이 감액되었기에 세입예산이 축소되었음.
- 세입예산 축소에 따른 사회복지지원사업 추진은 별다른 어려움 없이 추진 가능함.

< 검토 의견 >

□ (162쪽)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

- 관내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1억 2,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
 - 본 사업은 계룡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을 위한 특별지원조례에 근거하여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임
 - 세출예산 설명자료 34쪽에 따르면 가구당 월동대책비 7만원, 수학여행비로 1인당 5만원 등으로 산출되었음
 - 그러나,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으로 4,000만원을 삭감하였는데,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실경비 지원방안은 없는 것인지 설명이 요구됨

< 답변 >

- 저소득주민 생활안정특별지원조례에 의하면
 - 맞춤형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지원하며, 2015년말 기준으로 월동대책비, 교복비, 기저귀대, 건강증진비, 수학여행비, 교육비로 총 920명 8천만원을 집행하였음.
- 2015년 제3회 추경에서 4,000만원을 삭감한 사유는
 - 전년도 교복비 및 교육비 대상자 다수가 맞춤형 복지급여 시행으로 차상위에서 기초수급자로 편입됨에 따라 대상자가 감소하여 삭감하였음.
-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 방안으로는
 - 2016년에는 차상위 계층 지원 기준이 최저생계비 120%에서 중위소득 50% 이내로 확대됨에 따라 신규 대상자 증가가 예상되며, 이에 적극 발굴하여 지원하고자 함.

○ 지원내용

구 분	산 출 내 역	비 고
계	120,000천원	
월동대책비	70천원 × 500가구 = 35,000천원	10월
신입생 교복비	동복 : 350천원 × 40명 = 14,000천원	2월
	하복 : 150천원 × 40명 = 6,000천원	4월
교육비	200천원 × 120명 = 24,000천원	2월
수학여행비	50천원 × 125명 × 2회 = 12,500천원	상하반기
기저귀대	50천원 × 12월 × 30가구 = 18,000천원	분기
건강증진보조비	30천원 × 350명 = 10,500천원	생일달

< 검토 의견 >

□ (176쪽) 어린이집 환경개선

- 관내 어린이집(46개소)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는데
 - 1개소당 평균 652만원정도 투자되는 사업으로 어린이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미래의 꿈을 키울 수 있을것이나
 - 보편적이고 균등한 시설투자보다는 평가를 통해 운영실적이 우수한 시설에 집중투자하여 시설 스스로가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것인지 설명이 요구됨

< 답변 >

- 관내 어린이집 46개소 어린이집의 열악한 환경개선을 위해 당초 도비 2억원, 시비 2억원을 들여 기능보강사업을 추진하려 하였으나 우리시 재정여건으로 인해 시비 1억원을 계상하였음.
- 부족한 1억원은 여건을 보아 추경 등에 반영하고자 하며, 사업 추진은 타시군의 사례도 참조하고 자체 보육시설 실태 조사 후 어린이집 연합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대안을 마련하겠음.

< 검토 의견 >

□ (기금예산안 29쪽) 자활기금

- 자활기금의 운영목표 및 기금 활용방안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

< 답변 >

-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3 ‘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’ 자활기금 적립이 필요하며, 2016년도부터 2025년까지 5억원의 기금적립을 목표로 추진하고자 함.
- 자활기금 활용방안으로는,
 - 자활근로 참가자의 자활조성을 위한 자금 대여
 - 수급자 및 차상위자 채용 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
 - 자활지원계획의 집행에 필요한 비용
 - 자활지원에 필요하여 조례로 정한 사업 지원
 - 자활사업 연구·개발·평가 등을 위한 비용
 -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을 위하여 사회보험료 지원 등으로 활용하겠음.